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493
----------	-------

발의연월일 : 2025. 10. 10.

발 의 자 : 민형배 · 안도걸 · 조계원
김문수 · 이개호 · 최혁진
양부남 · 문정복 · 정준호
박지원 · 김우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중견기업이 여성 임원 비율, 임금격차 완화, 육아휴직 대체 고용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인건비를 일부를 세액공제하고자 합니다. 여성의 노동환경 개선과 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4년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임금격차는 31.2%로, 남성이 월 100만 원을 받을 때 여성은 69만 원을 받는 수준입니다. 회원국 평균(12.1%)의 약 2.6배에 해당하며, 그 뒤를 잇는 이스라엘·라트비아·일본 등도 20%대 격차를 보였습니다. 성별 임금격차가 30%를 넘는 국가는 한국뿐입니다.

여성의 고위직 진출도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칩니다. 지난해 한국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14.6%로, OECD 평균(34.2%)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유리천장, 임금격차, 육아휴직 여성 노동자 기피 등 불평등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조세특례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여성 임원 또는 여성 노동자의 인건비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일정 부분 공제하려 합니다. 첫째, 전체 임원의 35%를 여성에게 할당할 것. 둘째, 여성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남성의 85% 이상일 것. 셋째, 육아휴직 및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신청 시 이를 대체할 여성 노동자를 고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지원할 것. 이를 통해 여성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안 제104조의36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36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36(여성임원비율 확대 등의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임명·고용하는 여성임원 또는 여성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여성임원등”이라 한다)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임명·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여성임원등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여성임원등이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체 임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5 이상일 것
2. 전체 여성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전체 남성근로자의 평균 임금으로 나눈 비율이 100분의 85 이상일 것
3. 해당 기업의 여성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이나 같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대체하는 여성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지원을 할 것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평균 임금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임원비율 확대 등의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명·고용하는 여성임원등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04조의36(여성임원비율 확대 등의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u> <u>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임명·고용하는 여성임원 또는 여성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여성임원등”이라 한다)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임명·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여성임원등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여성임원등이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인 경우는 제</u>

외한다.

1. 전체 임원 중 여성이 차지하
는 비율이 100분의 35 이상일
것

2. 전체 여성근로자의 평균 임
금을 전체 남성근로자의 평균
임금으로 나눈 비율이 100분
의 85 이상일 것

3. 해당 기업의 여성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
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이
나 같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대체하는
여성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지원을 할 것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기업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평균 임
금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